

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1선거구 성흠제 의원입니다.

○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이번 조례안은 지하철 역사, 지하상가 등 서울시 지하 시설물에 폭우 등 재해에 대비한 안전 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

현행 조례에 제11조를 신설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 침수 방지를 위해 물막이 판 등 필요 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.

○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

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 시설물의 재해 예방 대책을 강화하여 서울시가 안전 도시로 거듭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 
바라며,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본 의원이 제안드린대로  
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